

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정오표

(‘25. 1. 24.)

페이지	구분	수정 전	수정 후	비고
103쪽	근로·사업소득 공제	4)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[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] ·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(권)자, 자립준비청년, 65세 이상 노인, 등록장애인의 일용근로소득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자동공제 됨에 유의	4)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[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] ·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(권)자, 자립준비청년, <u>가정 밖 청소년</u> , 65세 이상 노인, 등록장애인의 일용근로소득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자동공제 됨에 유의	대상자 추가
105쪽	근로·사업소득 공제	(2) 30세 이상(30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)에 해당하는 초·중·고등학생인 수급(권)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,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 적용	(2) 30세 이상(<u>199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</u>)에 해당하는 초·중·고등학생인 수급(권)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,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 적용	연령기준 연도전환
105쪽	근로·사업소득 공제	(3) 29세 이하(30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적용), 대학생 수급(권)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 적용	(3) 29세 이하(<u>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</u>), 대학생 수급(권)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 적용	연령기준 연도전환
105쪽	근로·사업소득 공제	(4) 아동시설폐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(아동시설입소 및 가정위탁보호 중인 기간은 당연 포함) 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복지시설 폐소 후 5년 이내(청	(4) 아동시설폐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(아동시설입소 및 가정위탁보호 중인 기간은 당연 포함) 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복지시설 폐소 후 5년 이내(청	시스템 기능개선 완료

페이지	구분	수정 전	수정 후	비고
		소년복지시설 입소 중인 기간은 당연 포함)의 가정 밖 청소년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 적용 ※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되는 근로·사업소득에서 6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근로·사업소득으로 수정 입력 필요(30% 공제는 자동 적용됨)	소년복지시설 입소 중인 기간은 당연 포함)의 가정 밖 청소년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 적용 <u><삭제></u>	
105쪽	근로·사업소득 공제	(5) 65세 이상 노인(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) 및 <중략> 수급(권)자는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 적용	(5) 65세 이상 노인(<u>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</u>) 및 <중략> 수급(권)자는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 적용	연령기준 연도전환
106쪽	근로·사업소득 공제	(9)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(<u>2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적용</u>)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	(9)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(<u>24세 이하,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</u>)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	연령기준 연도전환